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

제정 2017. 10. 16.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 259호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(이하 개발원이라 한다)이 시행하는 사업과 운영에 대한 투명한 감시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·관행·업무 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"청렴옴부즈만"(이하"옴부즈만"이라한다)이라 함은 개발원이 시행하는 사업과 운영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, 불합리한 제도·관행·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장 옴부즈만의 구성

제4조(구성) ① 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구성한다.

-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감사담당 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원장이 위촉한다.
- 1. 복지·회계학, 법학, 행정학, 경영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
- 2. 변호사, 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
- 3. 공공기관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
- 4. 국가,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
- 5. 기타 일자리 업무분야 관련성 또는 사회적 신망이 있는 전문가

제5조(임기 및 신분보장)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- ② 옴부즈만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- 1.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. 옴부즈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

- 3. 심신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제9조의 비밀유지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5. 사회적,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3장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

제6조(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)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민원사무의 확인과 처리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
- 2.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시정·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
- 3. 개발원 윤리경영 또는 반부패청렴시책 제고를 위한 자문·건의·제안
- 4. 개발원의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
- 5. 개발원 주요 계약 및 평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감사담당 부서로부터 옴부즈만 활동을 요청받은 건에 대한 모니터링
- 6. 기타 감사담당 부서장의 요청에 의한 자문·건의·제안·의견 제시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.
- 1.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
- 2.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
- 3.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
- 4. 대외비에 해당하여 원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7조(배제·회피·기피)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배제된다.

- 1.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지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
- 2.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
- ② 옴부즈만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

제8조(회의 및 활동) ① 감사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옴부즈만 회의 또는 활동을 수행 한다.

- ② 옴부즈만 회의 또는 활동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진행할 수 있다.
- ③ 옴부즈만 직무수행 후 자문, 의견, 권고 등 사항이 있을 때 감사담당 부서에 제출한다.
- 제9조(비밀유지)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비밀·정보·문서 등을 제3자에게 임의로 비밀누설·공표·배포· 유포 및 도용할 수 없다.

제10조(수당 등) 옴부즈만 회의 등에 참여할 때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,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청렴옴부즈만 의견서									
제 목									
대상부서	부서명						담당자		
처리구분	□ 시정권	고	개선권고	미지	문	□ 건의	·제안 🗆	의견제시	□기타
의견내용									
「한국노인인력개발원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」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안합니다.								제1항에	
			년	월		일			
한국노인인력개발원 청렴옴부즈만					(서명 또는 날인)				
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귀하									